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557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최웅, 류호문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60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304,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570원을 61,433,260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던 소외 B과 사이에 2016. 4. 19. 보증금액을 18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및 2016. 4. 21. 보증금액을 72,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B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의 신용이 악화되자 원고는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카단1098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2. 18.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19.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20. 9. 4. 주식회사 F에게 43,508,442원을, 2020. 10. 8. 주식회사 E에게 168,177,65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차전15384호로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30. ‘B은 원고에게 214,196,191원 및 그 중 211,686,0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1. 20.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2020. 2.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0. 2.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7. 15. 1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게 9,940원을, 신청채권자인 G조합에게 92,039,916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28,57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1,304,690원을, 교부권자인 익산세무서에게 6,765,2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61,304,69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1. 7.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304,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570원을 61,433,260원으로 각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2016. 4. 19.과 2016. 4. 21.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0. 2. 11.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20. 9. 4. 주식회사 F에게 43,508,442원을, 2020. 10. 8. 주식회사 E에게 168,177,654원을 각 대위변제함에 따라,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2020. 9. 4.부터 2020. 10. 8.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원고와 B은 2016. 4. 19.과 2016. 4. 21.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그 후 B의 신용이 악화되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발령됨에 따라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의 신용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이행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20. 9. 4. 주식회사 F에게 43,508,442원을, 2020. 10. 8. 주식회사 E에게 168,177,654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2. 11. 당시 B의 재산상태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극재산(1,999,756,058원)이 적극재산(395,617,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 D에 대한 영업가치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운영하던 D의 부지 및 공장에 대해 2019. 11. 28.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2. 1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15. 위 부지 및 공장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의 영업가치를 감안하더라도 2020. 2. 11. 당시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극재산]

순번	종류	소재지번 및 차량등록번호	가액(원)
1	토지	익산시 H 대 165㎡	385,657,000
2	건물	익산시 H 시멘블록조 단층주택 17.98㎡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04㎡	
3	토지	익산시 I 잡종지 13㎡	
4	토지	익산시 J 잡종지 79㎡	
5	토지	익산시 K 전 220㎡ 중 지분 220분의 171(B 지분 전부)	
6	집합건물	L아파트 M호	
7	집합건물	L아파트 N호	
8	건물	익산시 O 위험물 저장소 49㎡ 및 20㎡	
9	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	8,220,000
10	자동차	(차량번호 2 생략)	1,740,000
11	자동차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말소
합계			395,617,000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원고	211,800,000
2	주식회사 P	1,284,926,265
3	Q	199,746,785
4	주식회사 R	94,283,008
5	G조합	70,000,000
6	G조합	20,000,000
7	A(피고)	119,000,000
합계		1,999,756,058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이 사업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B에게 2013. 2. 20. 2500만 원, 2014. 4. 29. 2400만 원, 2014. 10. 30. 7000만 원 합계 1억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B의 편의를 봐 주는 대신 대여금의 지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2020. 2. 11. B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20. 2. 11.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위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인의 채권자 중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B에게 신규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아울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G조합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11,000,000원과 39,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청구금액을 211,800,000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가압류결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와 사이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 피고로서는 B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21. 6. 23.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이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2021. 7. 15. 배당기일을 열고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28,57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1,304,690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61,304,69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21.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7.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5, 6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과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304,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570원을 61,433,260원으로 각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차전1538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14,196,191원 및 그 중 211,686,0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21. 1. 20.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제5,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60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304,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570원을 61,433,26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별지